

<p>한다.</p> <p>제5조(주민공개에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시설공사, 물품의 제조 및 구매,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</li> <li>3.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동을 저해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6조(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) 시장의 결위,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, 신임시장은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한다.</p> <p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원의 사기양양 및 심신수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공무원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(이하 “수련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 수련원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.</p> <p>제3조(업무) 수련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련원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</li> <li>2. 수련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</li> </ol> <p>제4조(원장) ① 수련원에 원장 1인을 두고, 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 ②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제5조(공무원) 수련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 환경관리실(환경보전과) 사무명란 제6호가목중 “운행차의 수시점검”을 “운행차의 수시점검(단,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)”로 한다.</p> <p>별표 도로국(도로계획·도로관리과) 사무명란 제2호중 “일반터널의 구조·안전관련사항”을 “일반터널”로 하며, 사무명란 제5호중 가목,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가목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종전 조례 별표(도로계획·도로관리과) 사무명란 제5호중 가목 가로청소사무의 경우는 '97.6.30까지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호중 “2,543명”을 “2,538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4호중 “9,736명”을 “9,754명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본청의 감축정원 5명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종전 조례 별표(도로계획·도로관리과) 사무명란 제5호중 가목 가로청소사무의 경우는 '97.6.30까지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·단체 등에 서울특별시환경상(이하 “서울환경상”이라 한다)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
제 2 조(상의 종류) ① 서울환경상은 환경시민 운동부문, 환경기술부문, 환경보전부문, 자원 재활용부문 등 4개 분야로 구분한다.

② 서울환경상은 대상 1인, 분야별로 각각 우수상 2인, 장려상 3인을 선정·시상한다.

제 3 조(수상대상) ① 서울환경상은 서울특별시의 환경분야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(단체·기업체를 포함한다. 이하 “시민 등”이라 한다)에게 수여한다.

② 수상자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- 1. 환경시민운동부문 : 환경 각 부문에서 환경교육·홍보·시민운동에 기여한 시민 등
- 2. 환경기술부문 : 환경 각 부문에서 환경기술 및 설비개발·보급부문에 기여한 시민 등
- 3. 환경보전부문 : 수질, 대기, 소음·진동, 토양 등의 오염방지 부문에 기여한 시민 등
- 4. 자원재활용부문 : 쓰레기종량제, 분리수거,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에 기여한 시민 등

제 4 조(시상 시기) 서울환경상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수여한다.

제 5 조(상패, 부상 등)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·메달·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.

제 6 조(수상자 사후관리)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②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은 수상자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.

제 7 조(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되며, 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 3인, 시의원 2인,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으

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 조(수상후보자 추천) 수상후보자 추천은 서울특별시 거주시민 10인 이상, 국가기관,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,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행정기관에 신고(등록)된 단체가 할 수 있다.

제 9 조(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)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에서 공적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수상자 결정)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
제 11 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환경계획과장이 되며, 서기는 환경계획과 환경행정계장이 된다.

제 12 조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3 조(회의의 비공개) 수상 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 14 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서울환경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안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